



## 2) 기능별 정원 증원 내역

구 분	부서명	업무명	내용	인 력 증 원					
				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
계				27	27	-	-	-	-
사회복지	복지정책과	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(돌봄SOC센터)	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현장밀착형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	2	2	-	-	-	-
	동주민센터 (10개동)			20	20	-	-	-	-
문화관광	문화체육과	금천뮤지컬스쿨 건립·운영	금천뮤지컬스쿨 총괄 운영	2	2	-	-	-	-
공중보건	보건의료과	역학조사	감염병예방 관리인력	2	2	-	-	-	-
공공안전	안전도시과	안전도시 조성 및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영	스마트도시 및 디지털 뉴딜 사업 추진 인력	1	1	-	-	-	-

## 3) 인력운용계획에 따른 인건비 편성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9. 12.31	2020년		2021년		2022년		2023년		2024년		2025년		
		금액	증감	금액	증감	금액	증감	금액	증감	금액	증감	금액	증감	
순계세입모	119,044	129,339	+10,295	143,668	+14,329	153,094	+9,426	159,003	+5,909	169,417	+10,414	180,739	+11,322	
자체수입	계	119,044	129,339	+10,295	143,668	+14,329	153,094	+9,426	159,003	+5,909	169,417	+10,414	180,739	+11,322
	지방세	78,581	92,714	+14,133	104,807	+12,093	113,284	+8,477	119,247	+5,963	129,197	+9,950	140,050	+10,853
	세외수입	40,463	36,625	△3,838	38,861	+2,236	39,810	+949	39,756	△54	40,220	+464	40,689	+469
	지방채	0	0	0	0	0	0	0	0	0	0	0	0	0
기준인건비 편성액	103,485	106,816	+3,331	106,550	△266	109,747	+3,197	113,039	+3,292	116,430	+3,391	119,923	+3,493	

## 3. 관계법령

가.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나.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

# 관계법령

##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23조(인력운용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(이하 "기본인력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,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시·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와 협의하여야 하며, 시·도지사는 시·군·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6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④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제3항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,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2. 6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⑥ 기본인력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##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

제3조(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·기능별 인력 배치계획
2.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용
3.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
4.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(公社)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